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소백안

의 안 번호 45

제출일시 : 1998. 11. 제 출 자 : 서초구청산

1. 제안이유

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통합방위지원 [비상33820-11 (196. 2 6)] 업무를 시행하여 왔으나, 통합방위법 (법률 제5264호, '97. 1 12)이 제공 '97. 6.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윤연급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통합방위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때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기 능 (안 제2조)

- ㅇ 지역 통합방위 대비책
- o 통합방위작전·훈련시 지원대책
- ㅇ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· 운영 및 지원대책 등

나. 구 성 (안 제3조)

- ㅇ 위 원 : 50인이내
 - 구의회 의장, 지역군부대의 장
 - 안보관련 지방관서의 장
 - · 사회단체의 장 및 기타 위촉하는 자
- 의장(구청장) 1명, 부의장(부구청장과 위촉직중 1명) 2명
- o 임 기 : 당해 직책 재임기간 (단, 위촉직은 1년 연임가능)

다. 회의개최 (안 제7조)

- ㅇ 정기회의 : 분기마다 1회이상 소집
- ㅇ 임시회의 : 의장 필요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,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

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

나. 예산조치 : 1999년 예산편성 예정(추경)

다. **합** 의 : 필요없슴. 라. 기 타 : 조례 별침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

- 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,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초구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통합방위 대비책
 - 2. 통합방위작전 · 훈련의 지원대책
 - 가. 통합방위작전시 차량·선박 및 시설등의 지원대책
 - 나. 통합방위작전 · 훈련 참여를 위한 수민홍보 · 계몽 및 지원대책
 - 다. 취약지역 대비책
 - 라. 통제구역 설정
 - 마.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
 - 3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· 운용 및 지원대책
 - 가.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
 - 나.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·관·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
 - 4.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
- 제 3 조 (구성) ① 협의회는 의장 1인, 부의장 2인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,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중에서 1인을 선임한다.

-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계호에 정한 자로 한다.
- 1. 서초구의회 의장
- 2.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장
- 3. 211연대장
- 4. 서초경찰서장
- 5. 방배경찰서장
- 6. 국가안전기획부 조정관
- 7. 52사단 기무부대장
- 8 . 서초세무서장
- 9. 반포세무서장
- 10. 양재세무서장
- 11. 서초소방서장
- 12. 서초우체국장
- 13. 서초구재향군인회장
- 14. 한국자유총연맹 서초귀지부장
- 15. 한국통신 반포전화국장
- 16. 한국전력공사 강남지점장
- 17.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
- ④ 의장, 부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⑤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 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제 4 조 (간사)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장을 간사로 하고, 다음 각호의 서기를 둔다.
 - 1. 총무담당서기 : 총무과창
 - 2. 민방위담당서기 : 민방위재난관리과장
- 제 5 조 (의장의 지무등)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.
 - 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대.

- 제 6 조 (회의록)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· 비치 하여야 한다.
- 제 7 조 (회의등) ① 혐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.
 -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 -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파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 8 조 (협의회의 통합운영)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.
 - 1.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초구방위협의회
 - 2.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초구민방위협의회
- 제 9 조 (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 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초구청장 소속하에 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운영하며 본부장은 부구 청장이 된다.
 - ② 단, 동사무소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동사무소내에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.
 - ③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대표로 구성하되 상황실은 지하종합 ·상황실에 분야별 지원반은 각 담당관·과·본무에 설치 운용한다.
 - ④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별표 1과 끝다.
 - ⑤ 기타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

- 제 10 조 (통합방위종합상황실) 법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지원보부에 통합방위종합생황실을 설치 운영한다
- 제 11 조 (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)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
 - 1.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
 - 2. 주민신고망의 조직 · 운영
 - 3.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
 - 4. 거동 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
- 제 12 조 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부

즤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閏 丑 1】

통합방위지원본부

방위지원본부장 부 구 청

상

실 장: 행정관리국장

보 좌 관 :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반 원:각 지원반 대표 3명

(6급 1명, 6급이하 2명)

군·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

실 장 : 52사단 211연대

작전참모

서초·방배경찰서 경비과장

반 원 : 군·경정보작전요원

총괄지원반

반장 : 총무과장

반원 : 총무과 직원

인력동원지원반

| 반장 : 민방위제난|

관리과장

반원 : 민방위제난

관리과직원

수송지원반

반장 : 교통행정과장

반원 : 교통행정과

직원

건설복구지원반

반장 : 건설관리과장

반원 : 건설관리과

토목과,

하수과 직원

의료·구호 지 원 반

반장:사회복지

과장

반원:사회복지과

의 약 과 보건행정과

보건지도과

서초소방서 직원

보급(급식) 지 원 반

반장:산업환경

과장

반원:산업환경과

위 생 과 가정복지과

직원

홍보지원반

반장:문화공보

과장

반원:문화공보과

직원

재정지원반

반장:재무과장

반원:재 무 과

기획예산과

세 무 1과 세 무 2과

직원

통신지원반

반장:반포전화국

전송기술부장

반원:반포전화국

기술국

선로과 직원